

국민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I. 개정사유

-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,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 등에 따라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및 일자리 형태 변화로 AI·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안전망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'미래혁신단'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단장을 교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함.

II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7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(교학, 기획, 산학연구), 각 대학원장, 각 대학장, 각 처장, 성곡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,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, 국제교육원장, 창업지원단장, LINC+사업단장, 국민인재개발원장, 경력개발지원단장, <u>대학혁신추진단장</u> 및 각 부처장으로 구성한다.	제7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(교학, 기획, 산학연구), 각 대학원장, 각 대학장, 각 처장, 성곡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, 산학협력단장,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, 국제교육원장, 창업지원단장, LINC+사업단장, 국민인재개발원장, 경력개발지원단장, <u>대학혁신추진단장</u> , <u>미래혁신단장</u> 및 각 부처장으로 구성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u>이 개정학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	